

충청북도청풍장학회설치및육성조례(안)

의안
번호

255

제출년월일 : 1997.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충북의 21C를 대비한 장기적인 지역인재육성을 위하여 청풍장학회를 설립하였으나 농협도본부의 출연금만으로는 기금조성의 한계로 장학성과가 미흡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본장학회의 효율적 육성과 기금조성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도민을 위한 실질적인 장학사업을 추진코자 함

주요골자

- 장학회설립 및 운영근거규정(제2조~제5조)
 - 명칭 및 소재지는 재단법인 청풍장학회로 하고 청주시 소재로 함
 - 재산은 정관으로 정함
 - 정관제정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임원의 정수와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 장학사업내용 및 수혜대상(제6조~제7조)
 - 장학생 선발·지급·기금및관리·기타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으로 함
 - 수혜대상은 충북도민의 자녀(대학생)로 하고 선발·지급기준 등 세부사항은 장학회 운영규정으로 정하도록 함
- 장학회 지원 및 관리(제8조~제12조)
 - 도지사는 예산범위내서 재산을 출연 및 관리토록 함
 - 매년 예산관련사항과 장학회 운영 상황을 지도감독 할수 있도록 함
- 기타사항(제13조~제15조)
 - 준용규정 : 관계법령과 정관 준용
 - 운영규정 : 장학회운영 규정으로 정함
 - 규칙 :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 부칙 :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 관계법규 :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4조, 지방재정법 제14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

충청북도청풍장학회설치및육성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를 발굴·양성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청풍장학회를 설립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지) ① 장학회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청풍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라 한다.

② 장학회의 주사무소는 청주시에 둔다.

제3조(재산) 장학회의 재산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정관) 장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재산에 관한 사항
6. 재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임원의 정수, 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기타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임원) 장학회에 이사장,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및 선출 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사업) 장학회는 제1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
3. 기타 장학사업에 필요한 제반 사항

제7조(장학금 지급대상) ①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충청북도 도민의 자녀로서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신입생 포함)으로 한다.
② 장학생의 선발 및 장학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장학회의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재산출연) 도지사는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회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 또는 출연 할 수 있다.

제9조(회계연도) 장학회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에 의한다.

제10조(사업계획 승인 등)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제11조(결산서 제출)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 및 검사) 도지사는 장학회의 운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할수 있으며 도비 출연과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하여 검사 할수 있다.

제13조(준용) 장학회의 설립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관계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운영규정)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규칙과 정관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장학회가 따로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립된 장학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 ③ (재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성된 장학회의 재산은 이 조례에 의한 재산으로 본다.